함께해요 을지연습, 튼튼해요 국가안보

교육과학기술부

받　음　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　목　『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』 일부개정 알림

1. 『학술진흥법』 개정(2011.7.21)에 따라 전 학문분야에 걸친 연구윤리 확보 시책 추진과 연구윤리 확보 노력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2. 이에 따라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개정 등을 위한 『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』이 일부개정(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, 2012.8.1 시행)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

3.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서는 자체 규정 정비 등 지침 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『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』 일부개정 전문 1부.　끝.

교육과학기술부장관

수신자　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출연연

주무관 이선희　　서기관 송병윤　　학술인문과 전결 08/20 장 이강복

협조

시행　학술인문과-3403 (2012.08.20.)　　접수　산학협력과-3475/1635 (2012.08.20.)

우 110760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과학기술부 607호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학술인문과 / www.mest.go.kr

전화 02-2100-6850 전송 02-2100-6875 / sunny1583@mest.go.kr / 공개

Me First, 녹색은 생활이다 !

공람　조교　조교　조교　직원　직원